	가정통신문 [제18 - 162호] **“2018년 동구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”**	학생생활지원부 627-6978

안녕하십니까? 학부모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겨울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▣ 급식지원 신청방법

2018년 겨울·봄방학 중 결식이 우려되어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**2018년 12월 7일(금)까지**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 우편신청(**“아동급식 신청(추천)서”**를 해당 동행정복지센터에 우편으로 제출)

② 방문신청(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)

▣ 급식지원 방법

○ 급식지원방법은 아래와 같으며, 동봉된 **“아동급식 신청(추천)서”**에 희망하는 급식지원방법을 ∨**표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희망급식지원방법

급식지원방법	[ ] 일반음식점 [ ] 행복도시락 [ ] 지역아동센터 [ ] 학교급식소

※ 시 아동청소년과-8077(2016.06.13.)「결식아동급식지원 사업 개선 계획」에 따라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(1~6학년)은 급식지원 시 도시락 배달로 지원

▣ 신청시 필요서류

○ 신청아동의 가정환경 및 소득요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
(예 : 건강보험증, 건강보험납입증명서,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등)

▣ 각 동 행정복지센터 연락처

행정복지센터	연락처	읍면동	연락처	행정복지센터	연락처
만석동	032-770-5771	송림1동	032-770-5864	금창동	032-770-5968
화수1.화평동	032-770-5786	송림2동	032-770-5888		
화수2동	032-770-5809	송림3.5동	032-770-5904		
송현1.2동	032-770-5823	송림4동	032-770-5925		
송현3동	032-770-5846	송림6동	032-770-5945		

※ 동구청 평생교육과 청소년지원팀 아동급식담당 ☎032-770-6834

▣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기준

(1)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: 주민등록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

☞ **(결식우려의 정의) 보호자의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,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**
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

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

③ 「긴급복지지원법」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
④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

⑤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·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

⑥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동반장, 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※ 다만,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

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

: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에 신청

※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※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

※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2018. 11. 30.

재 능 중 학 교 장